노형 벽강하이본 타워 7차 입주자 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3.**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9.07.03이전)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 12 .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mark>'청약Home'(www.applyhome.co.kr)</mark>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 에서 운영하는 <mark>"청약가상체험"</mark>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 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모델하우스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한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١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너 역함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을 통해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 1				

구	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0.07.08(수)	2020.07.09(목)	2020.07.15(수)	2020.07.27.(월)~07.29(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음 음 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당사 주택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3797-5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스마트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41088(2020.07.02.)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41-3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3층, 1개동 총 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3,224.5m²■ 건축면적: 1,846.9576m²■ 연면적: 12.186.3522m²

■ 주차대수 : 106대

■ 입주시기 : 2021년 1월

■ 공급대상

Ι

							세대 당 계약단	변적		세대별	공급 세대수		입주
구 분	주택관리번	관리번호 약	약식표기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대지		일반	입주 예정 시기
				(언중한역기단)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지하 주차장 포함)	합계	지 분	계	공급	
민	2020000823	01	72A	072.5687A	72.5687	25.4500	98.0187	37.7800	135.7987	33.6853	11	11	 2021년1월20일 (추후통보예정)
영 주		02	76A	076.1583A	76.1583	25.7645	101.9228	39.6488	141.5716	35.3516	59	59	
택		03	77A	077.6801A	77.6801	26.4447	104.1248	40.4411	144.5659	36.0580	9	9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MDF실,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의 홍보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공급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주택형	호실	층구분	세대수	===1		-11	, ,	1회(20%)	2회(20%)	3회(20%)	30%
	225	o. +	^1 -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0.08.30	2020.10.15	2020.11.30	입주지정일
	206	2층		160,392,360	328,607,640	489,000,000	48,900,000	97,800,000	97,800,000	97,800,000	146,700,000
	306	3층		160,392,360	334,607,640	495,000,000	49,500,000	99,000,000	99,000,000	99,000,000	148,500,000
	406	4층		160,392,360	340,607,640	501,000,000	50,1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50,300,000
	506	5층		160,392,360	346,607,640	507,000,000	50,7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52,100,000
	606	6층		160,392,360	352,607,640	513,000000	51,3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53,900,000
72A	706	7층	11	160,392,360	358,607,640	519,000,000	51,9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55,700,000
	806 906	8층		160,392,360	364,607,640	525,000,000	52,500,000	105,000,000	105,000,000	105,000,000	157,500,000
		9층		160,392,360	370,607,640	531,000,000	53,1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59,300,000
	1006	10층		160,392,360	376,607,640	537,000,000	53,7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61,100,000
	1106	11층		160,392,360	382,607,640	543,000,000	54,3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62,900,000
	1206	12층		160,392,360	388,607,640	549,000,000	54,9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64,700,000
	201			168,326,440	340,673,560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202			168,326,440	340,673,560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203	2층		168,326,440	340,673,560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204			168,326,440	340,673,560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207			168,326,440	340,673,560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301			168,326,440	346,673,560	515,000,000	51,5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54,500,000
	302	-		168,326,440	346,673,560	515,000,000	51,5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54,500,000
	303	3층		168,326,440	346,673,560	515,000,000	51,5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54,500,000
	304	-		168,326,440	346,673,560	515,000,000	51,5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54,500,000
7	307	-		168,326,440	346,673,560	515,000,000	51,500,000	103,000,000	103,000,000	103,000,000	154,500,000
76A	401		20	168,326,440	352,673,560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402	-		168,326,440	352,673,560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403	- 4층		168,326,440	352,673,560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404	-		168,326,440	352,673,560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407	1		168,326,440	352,673,560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501			168,326,440	358,673,560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502			168,326,440	358,673,560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503	5층		168,326,440	358,673,560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504			168,326,440	358,673,560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507	-		168,326,440	358,673,560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333,5.3,300	32.,000,000	32,. 33,300	. 55, . 55, 566	. 55, .55,500		

		공급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호실	층구분	세대수					1회(20%)	2회(20%)	3회(20%)	30%	
		\\ -								입주지정일	
			, ,							160,200,000	
						· · · · · · · · · · · · · · · · · · ·				160,200,000	
	6층			365,673,560		53,400,000		106,800,000		160,200,000	
604			168,326,440	365,673,560	534,000,000	53,4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60,200,000	
607			168,326,440	365,673,560	534,000,000	53,4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60,200,000	
701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54,1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62,300,000	
702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54,1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62,300,000	
703	7층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54,1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62,300,000	
704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54,1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62,300,000	
707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54,1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62,300,000	
801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64,400,000	
802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64,400,000	
803	8층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64,400,000	
804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64,400,000	
807		2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64,400,000	
901		30	30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55,5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66,500,000
902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55,5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903	9층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55,5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66,500,000	
904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55,5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66,500,000	
907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55,500,000	111,000,000	111,000,000	111,000,000	166,500,000	
1001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56,200,000	112,400,000	112,400,000	112,400,000	168,600,000	
1002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56,200,000	112,400,000	112,400,000	112,400,000	168,600,000	
1003	10층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56,200,000	112,400,000	112,400,000	112,400,000	168,600,000	
1004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56,200,000	112,400,000	112,400,000	112,400,000	168,600,000	
1007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56,200,000	112,400,000	112,400,000	112,400,000	168,600,000	
1101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5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70,700,000	
1102	- 11층 -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5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70,700,000	
1103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5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70,700,000	
1104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5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70,700,000	
1107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5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70,700,000	
	701 702 703 704 707 801 802 803 804 807 901 902 903 904 907 1001 1002 1003 1004 1007 1101 1102 1103 1104	602 603 604 607 701 702 703 704 707 801 802 803 804 807 901 902 903 904 907 1001 1002 1003 1004 1007 1101 1102 1103 1104	601 602 603 604 607 701 702 703 704 707 801 802 803 804 807 901 902 903 904 907 1001 1002 1003 1004 11007 1101 1102 1103 11층	601 602 603 604 604 607 701 702 703 705 704 707 801 802 803 804 804 807 901 902 903 903 904 907 1001 1002 1003 10층 1004 1007 1168,326,440 30 168,326,440	601 602 603 603 604 607 701 702 703 76 704 707 801 802 803 805 804 807 901 902 903 905 904 907 1001 1002 1003 106 1007 1101 1102 1103 116 168,326,440 365,673,560 168,326,440 372,673,560 168,326,440 372,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79,673,560 168,326,440 386,673,560 168,326,440 386,673,560 168,326,440 386,673,560 168,326,440 386,673,560 168,326,440 386,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168,326,440 393,673,560	601 602 603 604 607 607 701 702 703 705 704 801 802 803 805 804 807 901 902 903 905 904 907 907 1001 1002 1003 1065 1068,326,440 365,673,560 534,000,000 168,326,440 365,673,560 534,000,000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168,326,440 372,673,560 541,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79,673,560 548,000,000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168,326,440 386,673,560 555,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393,673,560 562,000,000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168,326,440 400,673,560 569,000,000	11月1日 11号 11号 1月日 1日日 1月日 1日日 1月日 1日日 1月日 1日日 1日日	1601	601	18	

			공급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주택형	호실	층구분						1회(20%)	2회(20%)	3회(20%)	30%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0.08.30	2020.10.15	2020.11.30	입주지정일
	1201			168,326,440	407,673,560	576,000,000	57,6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72,800,000
	1202			168,326,440	407,673,560	576,000,000	57,6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72,800,000
	1203	12층		168,326,440	407,673,560	576,000,000	57,6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72,800,000
	1204			168,326,440	407,673,560	576,000,000	57,6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72,800,000
76A	1207		9	168,326,440	407,673,560	576,000,000	57,600,000	115,200,000	115,200,000	115,200,000	172,800,000
	1301			168,326,440	414,673,560	583,000,000	58,3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74,900,000
	1302	13층		168,326,440	414,673,560	583,000,000	58,3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74,900,000
	1303			168,326,440	414,673,560	583,000,000	58,3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74,900,000
	1304			168,326,440	414,673,560	583,000,000	58,3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74,900,000
	205	2층		171,689,960	348,310,040	520,000,000	52,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56,000,000
	305	3층		171,689,960	354,310,040	526,000,000	52,6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57,800,000
	405	4층		171,689,960	360,310,040	532,000,000	53,2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159,600,000
	505	5층		171,689,960	366,310,040	538,000,000	53,8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161,400,000
77A	605	6층	9	171,689,960	373,310,040	545,000,000	54,5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63,500,000
	705	7층		171,689,960	380,310,040	552,000,000	55,2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65,600,000
	805	8층		171,689,960	387,310,040	559,000,000	55,9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67,700,000
	905	9층		171,689,960	394,310,040	566,000,000	56,600,000	113,200,000	113,200,000	113,200,000	169,800,000
	1005	10층		171,689,960	410,310,040	573,000,000	57,300,000	114,600,000	114,600,000	114,600,000	171,900,000

-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2.5687A	076.1583A	077.6801A	
약식표기	72A	76A	77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에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7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에 따라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기본 선택품목 및 추가선택품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9.07.03.이전) 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광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 아파트는 비무기과열자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관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관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관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모집공 중인분부터 적용) 한국검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점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 수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점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일반공급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점제 적용비율 ① 전용면적 85㎡ 초과 100%는 추점제로 지역되고, 나마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점제 우선공급* 적용 ② 전용면적 85㎡ 초과 100%는 추점제로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합점 부선공급* 적용 ② 전용면적 85㎡ 초과 100%는 추점제로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9.07.03.이전)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다. 의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점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함 경우 자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에비입주자 선정시 전수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점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함 경우 자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에비입주자 선정시 전수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점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조과함 경우 자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비입주자 선정시 전수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점에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조과함 경우 자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비입주자 선정시 연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주점이 발반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가격되는 경용기에 구점으로 선정 ** 가전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점이 발반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지역구분 없음)하여 주점으로 선정 ** 가전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점이 발반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지역구분 없음)하여 주점으로 선정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한 시 마달된 예비입주자 모든 입작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무점적 당점자에 발생 시 예비입주자 명단 연구소에 당점하면 공급 역사 문학의 당점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전상자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역 또는 선정순위가 정단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축지역 3개월(양급신청하라리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점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인터넷 청약 결사에 대한 사례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자는 "인터넷 청약 가상세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7.03)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 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1순위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제주특별 자치도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01111 7 7	1순위	2020.07.08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u>www.applyhome.co.kr</u>)		
일반공급	2순위	2020.07.09 08:00~17:3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 ※ 스마트폰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가능)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인터넷 취약자인 경우에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됨.(방문 접수시간 : 10:0 ~ 14: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17:30)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 '청약Home'(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가능)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ㆍ「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일반공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입일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반공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자와의 관계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 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0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무주택소명 서류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0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청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추가사항	0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은 주택공급신청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주민등록표등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H0b7l&A	05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명	20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뭐야토자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기업기단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COX 64 AM A6 ACC)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일반공급의 경우이며, 특별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④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단독주택
- ②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 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m'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전의「건축법」(법률 제751호, 205.05.26. 개정·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배우자

포함)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은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②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③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 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7.0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 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 수도권 :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 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 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통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통 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참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교열자구, 청약과열자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집일 현재 ○○시 거주신청자가 ○○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에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에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수 있습니다. • 에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수권공급을 적용(대규모택자개발자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에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에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수전공급을 적용(대규모택자개발자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천으로 선정 • 기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에비임주자 산변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최초로 예비임주자를 선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주자 선명이로 주택의 등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내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주자에 대하여 추점의 방법으로 등 호수를 배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주자에 대하여 추점의 방법으로 등 호수를 배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주자 전경되고 생각되고 연합하고 경우 관리 연합하다는 기약이부와 상관없이 당정자로 관리되며 예비 임주자 명단 및 순위은 당첨자의사를 보고 시 함께 발표되는 기업자 역단 및 순위은 당점자의 등 경우 전경자의 등 전경자의 보관되고 연합하고 결소 전용이 되었다고 연합하는 경공에서 전경자의 본 관련 대해 보관되고 전용하고 공략 관련되고 연합하고 공로 관리되면 예비 입주자 명단의 유럽자의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된 기업자 명단 및 순위은 당점자의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되는 기약자 명단 및 순위은 당점자의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하는 점점자의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되는 기관하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하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하고 있다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하고 함께 발표하는 기관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 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 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 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 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 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Ш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 확인	● 일시: 2020.07.15.(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일시 - 2020.07.27(월) ~ 2020.07.29(수) (10:00~17:00) • 장소
르년 0 년	2순위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주택전시관 제주시 노형동 3797-5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검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을 워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시 순위확인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byukkang.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7.15.(수) ~ 2020.07.24(수) (10일간)
인터넷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0.07.1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일 정	장 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7.27(월) ~ 07.29(수) 3일간. 10:00 ~ 17:00	당사 주택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7-5)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 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 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 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 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 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2020.07.03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 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계약시 구비사항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시 구비서류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전 사전검수를 받지 않은 당첨자는 아래의 구비서류 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함.

7 4	서류	유형	41CL 11 =	W 7 - 1 -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계약서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0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의임장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청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추가서류	0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제주은행	65-01-001095	아시아신탁㈜

- ※ 지정된 계약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ex) 501호 홍길동의 경우, "501홍길동"으로 기재
- ※ 본 계좌는 분양 대금 납부계좌로 향후 금융기관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지정납부일 이전에 선납하는 중도금/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일시납에 대한 선납할인 적용 없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 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 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 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 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을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월 20일(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월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일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규정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기밀성능 1등급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사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절수 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외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포함 주변 도로 및 지역에 실행중 또는 실행예정인 정책계획을 관련 행정부서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책계획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책계획은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0.8.18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잉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주택전시관,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미거주
	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의 당사자는 위탁사와 계약자이며, 시공사는 공급대상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개별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의 분양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정보통신	소방	비고
회사명	주식회사 성진건설기술단	㈜청운엔지니어링	㈜다온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19,000,000-	₩54,000,000-	₩36,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단위 :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9,915,900,000- (일금 이백구십구억일천오백구십만원)	제01282020-101-0006000호

-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_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 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 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 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 1. 「본 사업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위탁자인 형성개발(주),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 및 시공사 벽강종합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 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형성개발(주)이고, 아시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본 사업은 위탁자 형성개발(주)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 본 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신탁사인 아시아신탁(주)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과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형성개발(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수분양자(매수인)는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이행,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하자담보책임,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 등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형성개발 (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아시아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 효로 합니다.」
- 5.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자 형성개발(주) 및 수탁자 아시아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인 형성개발(주) 및 시공사인 벽강종합건설(쭈)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매수인)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 「개별분양 세대(호실)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 탁자 겸 수익자인 형성개발(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7.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형성개발(주)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형성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본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형성개발(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8.「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위탁사	시공사
상 호	아시아신탁주식회사	형성개발주식회사	벽강종합건설 (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22길 40 202호 (연동, 벽강하이본타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22길 40 202호 (연동, 벽강하이본타워)
등록번호	110111-3543801	220111-0096131	220111-0014919

■ 주택전시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7-5번지 홈페이지 : http://byukkang.co.kr/

■ 분양문의 : ☎ 064-702-83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바랍니다.